

문서번호	복지정책과-1636
결재일자	2015. 1. 22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



# 2015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계획

2015. 1.

**복지건강본부**  
(복지정책과)

# 2015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계획

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시민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외 교육관련 경비, 명절위문품비 및 월동대책비 등 계기성 경비를 추가 지원하여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.

## I 추진개요

추진근거 : 「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

※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현금 또는 물품 지원

지원대상 :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

○ 기초생활보장 수급자(시설수급자 제외, '14.12.31일 기준) (단위 : 가구, 명)

총 수 급 자		일 반 수 급 자		특 례 수 급 자	
가 구	인 원	가 구	인 원	가 구	인 원
129,895	194,808	123,641	184,238	6,254	10,570

※ 학생 현황 : 중·고 재학생 18,370명('14.11월)

○ 저소득 보훈대상자 : 5,000가구 내외(서울지방보훈청 추천)

지원내용 : 22,231백만원 (시비 100% )

구 분	지 원 대 상	지원내용(지원시기)	지 원 기 준	예산액(천원)
교 육 경 비	기초수급자 (해당 학생이 있는 일반· 교육특례 가구)	교통비(중·고등학생) (3월, 6월, 9월, 12월)	1인당 연 311천원 (720×2회×216일)	5,714,012
		교복비(중·고등 신입생) (2월, 4월)	1인당 연 300천원 (동복 200, 하복 100)	2,022,000
명 절 위 문 품 비	기초수급자(일반·특례)	설날, 추석 위문품비 (2월, 9월)	가구당 연 60천원	7,770,120
월 동 대 책 비	기초수급자(일반·특례)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	월동대책비 (11월)	가구당 연 50천원	6,725,100

※ 2014년 지원실적 : 21,361백만원(예산 22,953백만원, 집행율 93.1%)

## II 추진계획

### □ 교육관련 경비 지원

#### ① 중·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

○ 지원대상 : 일반수급자 및 교육급여 특례수급자 가구의 중·고 신입생

※ 특례수급자(교육급여 특례수급자 제외) 및 시설수급자 제외

○ 지원기준 : 1인당 연 300천원 (동복 200천원, 하복 100천원)

○ 지원시기 : 연 2회/ 2월 (동복구입비), 4월 (하복구입비)

- 동복 : 2.27(지급기준일 2.13 이후 2.28 까지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추가 지급)

- 하복 : 4.30(지급기준일 4.14 이후 4.30 까지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추가 지급)

○ 지급방법 : 중·고등학교 입학등록 여부 확인 후 수급자 또는 대상자의 계좌에 입금

○ 소요예산 : 2,022,000천원

#### ② 중·고등학생 교통비

○ 지원대상 : 일반수급자 및 교육급여 특례수급자 가구의 중·고등학생

※ 특례수급자(교육급여 특례수급자 제외) 및 시설수급자 제외

○ 지원기준 : 1인당 연 311,040원

※ 산출내역 : 720원(교통카드 사용기준) × 2회 × 216일 = 311,040원

※ 지원일수(216일) 산출내역 : 190일(권장 수업일수) + {52일(연간 토요일 일수) × 50%}

※ 신규수급자는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, 타시도 전입자는 전입일이 속한 달부터 당해 분기 지원액을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고, 휴학, 자퇴, 퇴학 등으로 급여 중지가 결정된 때에는 급여중지일이 속하는 분기의 지원액은 월할계산 반납처리

#### < 교통비 지원일수 산정방법 >

- 중·고등학교의 주5일제 수업 전면 시행으로 등교일수 감소 (240일 ⇒ 190일)
- 법정 수업일수(주5일제 전면 실시) : 연 190일 이상(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)
  - ※ '1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청 권장 수업일수 : 연 190일 이상
- 방학기간은 학교장 재량사항이므로 학교별로 동일하지 않음
- 주5일제 수업 시행으로 저소득층 자녀의 토요일프로그램(월 2~3회 시행) 적극 참여 권장코자 연간 토요일(52일)의 50% 교통비 지원

○ 지원시기 : 연 4회 분기별 지급 (3월, 6월, 9월, 12월)

구분	계	1분기 (3.1~5.31)	2분기 (6.1~8.31)	3분기 (9.1~11.30)	4분기 (12.1~익년2월말일)
중·고등학생 (교통비)	311,040원 (720원×2회×216일)	99,360원 (720원×2회×69일)	64,800원 (720원×2회×45일)	97,920원 (720원×2회×68일)	48,960원 (720원×2회×34일)

○ 지급방법 : 재학 여부 확인 후 수급자 또는 대상자의 계좌에 입금

○ 소요예산 : 5,714,012천원

### □ 명절위문품비 지원

○ 지원대상 : 기초수급자(일반·특례) 가구

※ 입양대상아동(일반수급자) 및 시설수급자 제외

○ 지원기준 : 가구당 60천원

○ 지원시기 : 연 2회 (설·추석, 각각 30천원씩)

- 설날(2.19) : 2.13(지급기준일 2.2 이후 2.19 까지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추가 지급)

- 추석(9.27) : 9.21(지급기준일 9.14 이후 9.27 까지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추가 지급)

○ 지급방법 :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

○ 소요예산 : 7,770,120천원

### □ 월동대책비 지원

○ 지원대상

- 기초수급자(일반·특례) 가구 (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)

- 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서울지방보훈청장 통보자(5,000가구 내외)

※ 추천요청(시 → 서울지방보훈청, 10.15) ▶ 명단통보(보훈청 → 시, 11. 5)

▶ 자치구 통보(시 → 구, 11. 9) ▶ 자격확인 후 지급(11.17)

※ 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기초수급자(중복지원 안됨) 및 타 시도 전출자 제외

○ 지원기준 : 가구당 50천원

○ 지원시기

- 11.17(지급기준일 11. 1 이후 11.17 까지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추가 지급)

※ 지급기준일 11. 10이후 11.17까지 타 시도 전출 및 사망자 지급 제외

- 지급방법 : 해당 지급일에 지원 대상자의 계좌에 입금
- 소요예산 : 6,725,100천원

**□ 예산과목**

정 책	단 위	세 부	편성목	통계목
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	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	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	일반보상금	사회보장적 수혜금

**Ⅲ 행정 사항**

○ 급여별 추진일정

구분	사 업 명		지급 기준일	수요파악 (예산요청)	예산 재배정	지 원	결과보고
				자치구(보훈청) → 시	시 → 자치구	자치구 → 수급자	자치구 → 시
상 반 기	중·고 신입생 교복비	동 복	'15. 2.13	'15. 2.17	'15. 2.24	'15. 2.27 (신입생 등록 확인 후)	'15. 3. 6까지
		하 복	'15. 4.14	'15. 4.17	'15. 4.24	'15. 4.30 (재학 확인 후)	'15. 5. 8까지
	중·고생 교통비	1분기 (3~5월)	'15. 3. 1	'15. 3. 5	'15. 3.15	'15. 3.20	'15. 3.31까지
		2분기 (6~9월)	'15. 6. 1	'15. 6. 5	'15. 6.15	'15. 6.19	'15. 6.30까지
명 위 문 품 비	설(2.19)	'15. 2. 2	'15. 2. 4	'15. 2. 9	'15. 2.12	'15.2 .27까지	
하 반 기	중·고생 교통비	3분기 (9~11월)	'15. 9. 1	'15. 9. 4	'15. 9.14	'15. 9.18	'15. 9.25까지
		4분기 (12~2월)	'15.12. 1	'15.12. 4	'15.12.14	'15.12.18	'15.12.28까지
	명 위 문 품 비	추석(9. 27)	'15. 9.14	'15. 9.16	'15. 9.18	'15. 9.22	'15.10. 8까지
	월 동 대 책 비	겨울철 (11월)	'15.11. 1	'15.11. 5 ·보훈대상자 (서울지방보훈청 추천)	'15.11.12	'15.11.17	'15.11.27까지

※ 상기 일정 및 하반기 지원계획은 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·시행될 수 있음

- 지원대상자가 누락되거나 중복 또는 부정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상자 선정·관리 철저(교육경비는 기초수급자 및 교육급여 특례수급자만 해당)
  - 중·고 신입생 등록확인 및 중·고 재학 여부 확인 철저

- 특히, 저소득 보훈대상자와 기초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월동대책비의 경우 동일가구에 이중(중복)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 확인
- 자치구에서는 추진일정에 따라 예산 재배정 요청, 급여지원 및 결과보고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
- 급여 개시일 등 부가급여 지원과 관련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『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』 지침을 준용하여 시행함.
-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(2015. 7. 1.)에 따라 지원 대상자인 기초수급자 자격구분이 다양화되고 대상인원의 증가가 예상되는 바, 2015. 하반기에는 부가급여 지원 개선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